

무배당 삼성화재 이율보증형보험

보 험 약 관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탁업자가 인수한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3. “가입자”라 함은 신탁업자가 인수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4.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함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함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3조(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기간)

-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이 반영된 보험료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9조(단위보험)

- ① 회사는 계약자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제도별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제도별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 국고채수익률②+ 통안증권수익률③)/3

-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제11조 ~ 제11조의3는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11조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 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에 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11조의2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의 경우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수익률, 통안채(1년만기)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국고채수익률②+통안증권수익률③)/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제11조의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의 해지환급금)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단위보험에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80%”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상 급여의 청구를 받아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중도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계약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사용자가 동일 계약자로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7.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제14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제도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60%로 합니다. 다만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합니다.

제16조(배당금의 지급)

-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단, 계약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인수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0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4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제도는 2023년 4월 19일 이후 최초부담금을 납입한 계약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합니다.

제2조(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 ② 제1항의 효력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